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무상실시 개방특허 특허료 감면 (안 제7조)

□ 개정 이유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출연(연) 등이 무상으로 특허를 제공한 경우, 경제적 이익 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허료 감면 제공
 - * 현행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 6년차까지 30~70%의 특허료만 감면하여 특허 개방·공유에 대한 별도 혜택 無

□ 개정 내용

- 특허권자가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무상 실시를 허용하고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허료 50% 감면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방특허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개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 창조경제혁신센터(ceei.creativekorea.or.kr),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
 -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개방특허 무상 실시(3년 이상)를 허용하며,
 - 특허료 감면 남용 방지를 위해 소수 중소·중견기업에만 특허 무상 실시를 허용할 경우 감면대상 제외

< 특허료 50% 감면 세부 요건(안) >

- 창조경제혁신센터(ceei.creativekorea.or.kr) 또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 특허 무상 통상실시 공개청약이 공시되어있을 것
- 무상 통상실시 희망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통상실시' 계약 허용 선언
- 특허료 감면 기간 중에 무상 통상실시 공개청약이 유효할 것
- 무상 통상실시 계약이 1건(계약기간 3년 이상) 이상 존재하고 계약기간 범위 이내이며, 특허등록원부에 동 계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
- 무상 통상실시 계약 당사자가 법률상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안) 일부 >

현 행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개정안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특허법」 제102조(「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허락한다는 의사를 표시(이하 “공개청약”이라 한다)한 특허권자 또는 등록실용신안권자에 대하여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공개청약에 따라 무상 통상실시권 설정의 계약을 체결한 통상실시권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포함될 것. 다만 해당 통상실시권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허권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고, 「특허법」 제118조(「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그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

3. 감면을 받으려는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연도분의 연도에 해당하는 전 기간이 통상실시권 설정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현 행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면제 또는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1. ~ 2의2. (생략)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⑦ 제6항에 따라 (생략)

⑧ 제6항에 따른 (중략)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후략)

<신설>

개정안

⑦ ----- 제5항까지의 -----

----- 권리설정등록시·연차등록료 납부시의 -----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 내지 제5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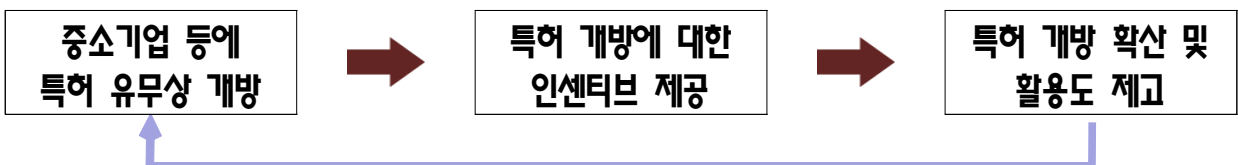
⑧ 제7항에 따라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에 따른 (중략) ----- 제5항 ----- (현행과 같음)

⑩ 제5항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감면 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효과

- 중소기업 제조설비에 대기업의 우수 특허를 결합하여 중소기업 新산업 창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 및 경제혁신에 기여
- 대기업·출연(연) 등의 잠자는 특허가 중소·중견기업에서 활용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특허 활용률 제고
- 유무상 개방특허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이나 출연(연) 등의 개방특허를 이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개정 이유

- 불필요 출원 자제 유도를 위해 개인의 연간 감면건수 상한을 설정하고, 면제자의 과다 청구항 출원에 심사청구료 부과

* 개인출원인 2명이 '14년도에 24,135건을 출원하거나 전액면제자 1인이 청구항 369항, 명세서 1,387면, 65개 발명군을 하나로 출원하는 사례 발생

□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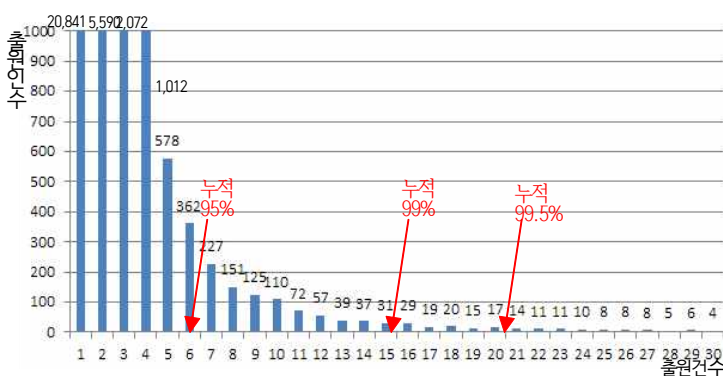
- 개인이 연간 20건 초과 출원시 그 초과된 출원은 30% 감면
 - 20건을 초과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 39명, 디자인 128명 등 연간 167명 수준으로 전 개인출원인의 0.5% 수준

* 170명이 평균 46건씩 총 7천6백건을 출원하였으나, 등록률은 1.7%(특허기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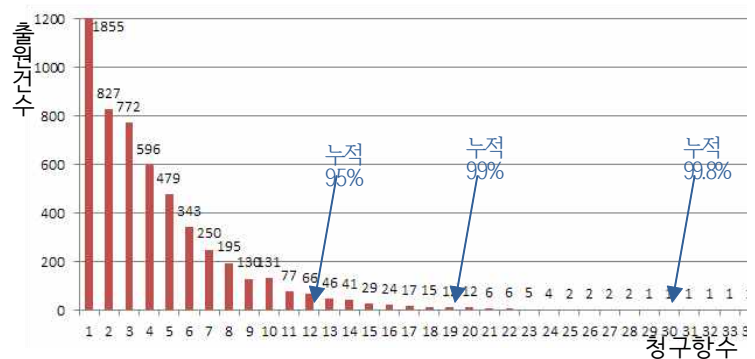
- 면제자출원의 청구항 30항 초과시 그 초과된 항에 대해 심사청구료 부과
 - 30항을 초과하는 출원은 전 면제출원의 0.2% 미만인 연 10건 수준

* 30항 초과 면제자출원의 평균 청구항수는 57.8항/ 전체 출원인 평균은 9항

《 연간 출원건수별 개인 출원인 수 》



《 면제자출원의 연간 청구항별 출원건수 》



□ 개정 효과

- 비정상 출원 감소에 따른 고품질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

□ 개정 이유

- 특허·실용신안법 개정으로 공지에외주장 보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완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필요

* 출원인이 실수 등으로 출원시 공지에외주장을 누락하였다라도 정해진 기간(보정할수 있는 기간 및 등록 후 3개월 이내) 내 보완 가능

□ 개정 내용

- 공지에외주장 보완수수료는 우선권주장 추가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일 수준(전자문서 18,000원/서면 20,000원)으로 산정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3조(안) 일부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 ----- -----. |
|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 -----. |
| | 6의2. 특허출원의 공지에외주장 보완료 가. 공지에외주장 보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공지에외주장 보완마다 1만8천원 나. 공지에외주장 보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공지에외주장 보완마다 2만원 |
| |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지에외주장 보완료 가. 공지에외주장 보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공지에외주장 보완마다 1만8천원 나. 공지에외주장 보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공지에외주장 보완마다 2만원 |

□ 개정 효과

- 자기공지로 인한 무효 가능성을 줄여 출원인 권리 강화

□ 개정 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15. 7. 1. 시행) 개정으로 수수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확대·다층화
 - All or Nothing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중위소득 기준 분야별(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현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은 개정법의 의료급여 수급 기준과 동일

□ 개정 내용

- 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한 소득수준 수급자인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수수료 면제
 - * 생계급여 수급자는 무조건 의료급여를 수급하므로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대상으로 지정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안) 일부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중략)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p> | <p>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p> |

□ 개정 효과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 활동 장려

□ 개정 이유

- 거절결정불복심판 심판청구료 징수시 청구항 수 산정을 위해 특허심판원 예규*를 제정·운영중이나, 위임근거 미비
 -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
- 특허법 제83조 등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출원'은 수수료 전액 면제이나, 평균감면율 적용 대상*에서 '국가에 속하는 출원' 누락
 - * 감면 대상자들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율을 평균하여 감면 적용
- '15. 1.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시 누락 사항* 보완
 -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 재심사보정시 징수근거 누락

□ 개정 내용

- 거절결정불복심판 심판청구시 청구항 수·디자인 수·상품류 수 기준 심판청구료 산정 위임근거 마련
- 평균감면율 적용 대상에 국가에 속하는 출원을 한 자 포함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심사등록출원 변경 재심사보정시 1디자인마다 8만9천원 징수근거 마련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3·4·7조(안) 일부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② (생략) |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각 호와 같다. | ③ _____. |
| 1. 거절결정불복심판·정정심판·정정무효심판 청구료 | 1. _____ |
|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단서 신설> | 가. _____ _____ .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청구범위의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

현행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7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
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단서 신설>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② (생략)

③ 「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
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정정심판 또는 정정
무효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
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단서 신설>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7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
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단서 신설>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보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
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 마. (생략)

바.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른 보
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
자인마다 4만원 <단서 신설>

개정안

나. _____
_____.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청구범위의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1. _____
_____.

가. _____
_____.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시 청구범위의 항수 산정에 관한 구
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나. _____
_____.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시 청구범위의 항수 산정에 관한 구
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_____.

1. ~ 6. (현행과 같음)

7. _____

_____.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_____ 다
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
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
는 1디자인마다 8만9천원으로 한다.

현행

③ 「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 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4만원 <단서 신설>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
디자인마다 26만원 <단서 신설>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버린다.

1.·2. (생략)

<신설>

개정안

③ _____
_____.

1. _____

가. _____
——.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나. _____
——.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_____.

1.·2. (현행과 같음)

3. 「특허법」 제83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에 따라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을 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6조에 따라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 개정 효과

○ 입법미비 사항 반영을 통한 법령 명확화